

이의신청서

※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즉시
이의 신청인	성명(명칭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이의신청 분야	☐ 임시운행허가		☐ 신규등록	☐ 변경등록
	☐ 이전등록		☐ 말소등록	☐ 저당등록
	☐ 압류등록		☐ 경정등록	☐ 자동차등록증
	☐ 자동차등록번호판		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	☐ 강제처리
	☐ 중고차 수출		☐ 정기검사	☐ 구조변경
	☐ 과태료·과징금		☐ 개선변경	☐ 기타
처분관청				
처분일		처분장소		
이의신청 내용 (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로 작성)	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8조제1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				
(서명 또는 인)			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
첨부서류	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	수수료 없음
신청안내		
1.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8조제2항)		
2.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.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8조제3항)		
3.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 (「행정심판법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)		